

● 제319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907,908,909)

2023. 06.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907, 908, 909

### I. 변경안 개요

####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 제출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시장
- 나. 제출일자 : 2023년 05월 30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06월 01일

##### 2. 제안이유

- 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인하여 기금 수입계획이 변경되고,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어르신 돌봄 시범 사업 도입,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사업 확대 및 변경으로 인하여 기금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2023년 수입계획 상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이 당초 878백만원에서 984백만원으로 106백만원 증가됨
- 나. 2023년 지출계획 상 정책사업비에서 비융자성 사업(스마트 돌봄을 위한 시범사업) 782백만원, 융자성 사업(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지원) 23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예치금 금액이 1,430백만원에서 524백만원으로 906백만원 감소하였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사전협의 완료

라. 기 타 : 2023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완료(원안가결)

##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 제출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자 : 2023년 05월 30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06월 00일

### 2. 제안이유

- 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하고 기금관리비가 감소함에 따라 2023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2022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2,999백만원 증가(6,583백만원 → 9,582백만원)하였음
  - 전세주택 보증금 집행잔액(2,497백만원), 이자수입 증가(269백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증가(215백만원), 기본경비 잔액(18백만원) 발생
- 나. 2023년부터 공모사업이 일반회계로 이관통합시행됨에 따라, 사업건설팅 비용 등 ‘기금관리비’ 소요액이 21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여유자금 예치’가 3,020백만원 증가하였음

※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미편성(일반회계 이관) : 7억원('22년) → 미편성('23년, △7억원)

다. 이에,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 3,020백만원 (131.5%), 기타 감액 21백만원(△51.2%)이 발생하였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 제출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자 : 2023년 05월 30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06월 00일

#### 2. 제안이유

- 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2023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2023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3,839백만원에서 3,886백만원으로 47백만원 증가함.
- 나. 서울광역자활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실집행잔액(발생이자) 등 반영으로 「기타수입」 금액이 당초 43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33백만원 감소 및 매입임대보증금 환수계획('23년 1,765백만원)에 따른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금액이 당초 800백만원에서

2,047백만원으로 1,24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세점포 임대자  
금 융자지원 추가 수요조사 결과 「민간 융자금」 지출금액이 당  
초 265백만원에서 335백만원으로 7천만원이 증가함.

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재무활동비) 금액이 당초 4,165  
백만원에서 5,356백만원으로 1,191백만원 증가하여 28.6% 변경  
되었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  
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  
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1. 변경안 개요

- 복지정책실 소관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금은 전체 4개의 계정(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주거지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주거지원계정은 주택정책실장이 운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계정은 복지정책실에서 운용하게 되어 있음.
- 상정된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1)에 근거하여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2. 노인복지계정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5조2)에 따라 운영 중이며, 2023년 기금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5조(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 2. 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 〈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2023년 기금내역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㉑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조성액 ㉒=㉑+㉓	비고
	계 ㉓=㉔-㉕	조성액 ㉔	사용액 ㉕		
12,474,128	△460,454	861,346	1,321,800	12,013,67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490,000 시금고 예치금 523,674

※ 당해연도 조성액 : 이자수입, 기타수입(보증금 반납, 사업집행 잔액 등)

※ 당해연도 사용액 : 사업비,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 금번 변경계획안에서는 2023년 수입 계획상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 금액을 당초 878백만원에서 984백만원으로 106백만원 (6.1%) 증가하였으며,
- 지출계획에서는 기존 4개 목적사업 가운데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목적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디지털 돌봄역량강화, 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 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 정서 지원 등 3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나타남.

- 
-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 4. 노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 5.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 6.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
  - 7.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 8. 노인교육사업
  - 9.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 10.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수입계획 변경내역(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 초 (A)	변 경 (B)	증감액 (C=B-A)	증감율(%) (D=C/A)	변경사유
계	1,738,987	1,845,474	106,487	6.1%	
이지수입	586,897	586,897	-	-	
기타수입	274,449	274,449	-	-	
예치금 회수	877,641	984,128	106,487	12.1%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변경

〈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지출계획 변경내역(안)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당 초 (A)	변 경 (B)	증감액 (C=B-A)	증감율(%) (D=C/A)	비 고	
계	1,738,987	1,845,474	106,487	6.1%		
5개 목적사업비 소계	305,800	1,318,800	1,013,000	331%		
1	어르신 정보화교육	40,000	40,000	-	-	
2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 지원	100,000	330,000	230,000	230%	사업내용 및 예산 변경
3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97,000	97,000	-	-	
4	어르신 주거지원	68,800	68,800	-	-	
신설	디지털 돌봄 역량 강화	0	300,000	300,000	100%	시범사업 신설
신설	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	0	450,000	450,000	100%	시범사업 신설
신설	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 정서지원	0	33,000	33,000	100%	시범사업 신설
예 치 금	1,430,187	523,674	△906,513	△63%		
기본 경비	3,000	3,000	-	-		

- 지출계획 가운데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의 경우, 그동안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점포 창업 사업에서 임대보증금만 지원하고 있어 집행실적(22년 1억원 중 1천만원 지출, 집행률 10%)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음. 이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집행기관에서는 임대보증금과 초기운영비(리모델링, 장비구입비 등)를 지원함으로써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을 재설계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표〉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사업 변경 내용

세부사업명	기정 예산	통계목 및 변경예산	사업내용	예산내역 및 향후계획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 지원	100,000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일자리사업장 융자지원에서 운영비 지원으로 지원범위 확대 및 사업 재설계 하여 동행식당 연계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사업장 투자비 270백만원 (3개소×90백만원)</li> <li>· 노후사업장 투자비 60백만원 (4개소×15백만원)</li> </ul>
		330,000		

- 또한, 3개 신규 시범사업의 경우 2022년 말부터 운영된 스마트돌봄 학습 TF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한 기금을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스마트 돌봄 사업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분석·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신규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예산 (단위: 천원)	사업내용	예산내역 및 향후계획
디지털 돌봄 역량 강화 추진	300,000	·찾아가는 체험 버스 운영 (유휴버스 활용 로봇 기기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체험버스 진행 요원) 28,290천원</li> <li>· 사무관리비 (스마트기기 체험</li> </ul>

세부사업명	예산 (단위: 천원)	사업내용	예산내역 및 향후계획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직급별 다각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추진	프로그램 운영 용역 등) 182,710천원 · 콘텐츠 연구개발비 50,000천원 · 로봇 등 디지털 기기 구축 39,000천원
스마트 노인복지관 구성	450,000	·노인종합복지관에 스마트 교육·체험기기를 설치	· 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 : (225,000천원×2개소) · 복지관 대상 공모를 통해권역별 2개소 조성 계획
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정서지원	33,000	·자립 취약어르신 대상 스마트 장비를 통한 복약 안내, 가족간 메시지 교류 등 24시간 돌봄서비스 구축	· 복약관리 기기 임대 및 설치 5개소*10대, 총 50대(33백만원)

- 본 운용변경계획안의 경우,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의 증가로 수입 계획의 예치금 회수가 증가하여 지출계획의 예치금 역시 동일 금액이 증가한바, 당초대비 20%를 초과 변경되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본 변경안에 대한 쟁점 사항은 없음.
-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지출계획 변경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이는 기금이 예산에 비해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만큼 기금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돌봄 사업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는 만큼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향후 본 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 장애인복지계정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6조<sup>3)</sup>에 따라 운영 중이며, 2023년도 기금조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2023년 기금내역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①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조성액 ②=①+③	비고
	계 ③=④-⑤	조성액 ④	사용액 ⑤		
23,982,458	△4,266,443	3,153,557	7,420,000	19,716,015	

- 금번 변경계획안에서는 2023년 수입 계획상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 금액을 당초 6,583백만원에서 9,582백만원으로 2,999백만원(45.6%) 증가하였으며,
- 지출계획에서 이를 반영해 예치금을 2,296백만원에서 5,316백만원으로(증 3,020백만원), 기본경비를 41백만원에서 20백만원(△ 21백만원)으로 조정하였음. 이는 23년부터 기금을 활용해 진행되던 장애인 공모 지원사업이 일반 회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금관리비 소요액을 감액시키고, 예치금을 증가시킨 것으로 별다른 쟁점은 없다고 하겠음.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7.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수입 계획 변경내역(안)

(단위 : 백만원)

항목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증감률
합계		9,737	12,736	2,999	30.8%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6,583	9,582	2,999	45.6%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전세보증금)		2,262	2,262	-	-
예탁금 이자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14	714	-	-
이자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157	157	-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전세보증금)	20	20	-	-

〈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출계획 변경내역(안)

(단위 : 백만원)

항목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증감률
합계		9,737	12,736	2,999	30.8%
사업비	민간융자금	7,400	7,400	-	-
예치금		2,296	5,315	3,020	131.5%
기본경비		41	20	△21	△51.2%

### 3. 자활계정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4)에 따라 운영 중이며, 2023년도 기금조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2023년 기금내역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계 ㉢=㉣-㉤	조성액 ㉣	사용액 ㉤		
8,306,719	1,469,556	2,415,375	945,819	9,776,275	- 시금고예치금 : 5,356,27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4,420,000

4)「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8조(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서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12.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3.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

- 금번 변경계획안에서는 2023년 수입계획 상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 금액을 당초 3,839백만원에서 3,886백만원으로 47백만원 (1.2%) 증가하였으며, 매입임대보증금 환수계획에 따라 용자금 회수 금액을 당초 800백만원에서 2,047백만원으로 1,247백만원(155.9%) 증가하였고, 서울광역자활사업 정상 결과에 따른 실 집행잔액 등을 반영해 기타 수입금액을 당초 43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33백만원(△76.7%) 감액하였음.

〈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수입계획 변경내역(안)

(단위 : 백만원)

항목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증감률
합계	5,041	6,302	1,261	25.0%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800	2,047	1,247	155.9%
이지수입	359	359	0	0
기타수입	43	10	△33	△76.7%
예치금회수	3,839	3,886	47	1.2%

- 지출계획의 경우 수입계획에서 변경한 것을 반영해 예치금을 4,165백만원에서 5,356백만원(28.6%)으로 증가시켰으며, '23년 전세 점포 임대자금 용자 지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신청 증액분 7천만원을 반영시킨 것으로, 별다른 쟁점은 없다고 하겠음.

〈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지출계획 변경내역(안)

(단위 : 백만원)

항목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증감률	
합계	5,041	6,302	1,261	25.0%	
사업비	비용자사업	606	606	0	0
	용자성사업	265	335	70	26.4%
기본경비	5	5	0	0	
예치금	4,165	5,356	1,191	28.6%	



문 의 처

도미화 입법조사관 (02-2180-8147)